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27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속적 건강영향조사 실시	2
※ 참고자료	8
1.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현황	8
2. 공항소음과 건강피해 관련 연구 현황	11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0일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항주변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속적 건강영향조사 실시

현행법 제15조제1항제2호1)는 환경부장관이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항주변지역의 경우에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1) 법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단지, 폐광지역, <u>교통밀집지역</u>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2. ----- <u>교통밀집지역</u> , <u>공항주변지역</u>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② ~ ⑦ (생략)

현재 공항소음의 방지 및 그 대책 마련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²⁾ 및 「환경정책기본법」³⁾에 따르면 공항

2)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소음도 환경유해인자의 일종으로서 건강영향조사의 범위에 포함됨.

개정안은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유해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6.6%에 달하며,

서울시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에 비해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⁴⁾⁵⁾.

따라서 공항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공항소음에 따른 건강피해를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⁶⁾ 공항소음 건강영향조사 결과

4) 【참고자료 2】 공항소음 관련 건강피해 연구 현황

5) 다만 공항소음과 해당 질환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님.

6)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를 바탕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⁷⁾

[표] 공항소음방지법의 소음대책·주민지원 관련 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소음대책지역에
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
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지설의 보완

③ ~ ④ (생략)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
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③ ~ ④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
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
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
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본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이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
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항소음 방
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안, 의안번호
2204134)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임.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 ③ (생략)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우선, 현행법에 따라서도 환경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공항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영향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행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지역의 범위에는 공항주변지역이 포함될 수 있음.

즉,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환경부장관은 공항주변지역 중 건강영향 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

으므로,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의무화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과 같이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을 법률에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른 지역도 건강영향조사 대상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등도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따라서 공항주변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 데 따른 실익과 건강영향조사 결정에 있어 환경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542

※ 참고자료

1.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현황

공항별	사업대상					
	구역		면적 (km ²)	가옥수 (호)	세대수 (세대)	인구수 (명)
합계	제1종구역		8.91	1	8	8
	제2종구역		7.22	24	26	65
	제3종 구역	구역계	78.96	64,112	80,887	211,821
		“가”지구	12.52	630	1,049	2,274
		“나”지구	24.33	17,450	22,202	56,082
		“다”지구	42.11	46,032	57,636	153,465
	인근지역		78.13	128,978	182,355	451,837
	합계(인근지역 제외)		95.09	64,137	80,921	211,894
김 포	제1종구역		0.91	－	－	－
	제2종구역		1.42	－	－	－
	제3종 구역	구역계	23.35	55,389	70,627	184,987
		“가”지구	2.37	172	545	1,054
		“나”지구	6.66	15,197	19,663	49,623
		“다”지구	14.32	40,020	50,419	134,310
	인근지역		33.10	114,216	164,628	406,038
	합계(인근지역 제외)		25.68	55,389	70,627	184,987
김 해	제1종구역		1.18	－	－	－
	제2종구역		0.65	2	2	9
	제3종 구역	구역계	14.65	700	1,166	3,632
		“가”지구	1.73	28	45	126
		“나”지구	3.99	163	319	948
		“다”지구	8.93	509	802	2,558
	인근지역		13.81	532	721	1,834
	합계(인근지역 제외)		16.48	702	1,168	3,641
제 주	제1종구역		0.85	1	8	8
	제2종구역		0.84	22	24	56

	제3종구역	구역계	13.75	7,911	8,912	22,741
		“가”지구	1.85	430	459	1,094
		“나”지구	3.74	2,090	2,220	5,511
		“다”지구	8.16	5,391	6,233	16,136
	인근지역		16.99	13,999	16,760	43,409
	합계(인근지역 제외)		15.44	7,934	8,944	22,805
울산	제1종구역		0.02	-	-	-
	제2종구역		0.17	-	-	-
	제3종구역	구역계	1.66	79	149	372
		“가”지구	0.27	-	-	-
		“나”지구	0.47	-	-	-
		“다”지구	0.92	79	149	372
	인근지역		1.05	-	-	-
	합계(인근지역 제외)		1.85	79	149	372
여수	제1종구역		0.01	-	-	-
	제2종구역		0.14	-	-	-
	제3종구역	구역계	1.38	5	5	8
		“가”지구	0.23	-	-	-
		“나”지구	0.42	-	-	-
		“다”지구	0.73	5	5	8
	인근지역		0.67	-	-	-
	합계(인근지역 제외)		1.53	5	5	8
인천	제1종구역		5.94	-	-	-
	제2종구역		4.00	-	-	-
	제3종구역	구역계	24.17	28	28	81
		“가”지구	6.07	-	-	-
		“나”지구	9.05	-	-	-
		“다”지구	9.05	28	28	81
	인근지역		12.51	231	246	556
	합계(인근지역 제외)		34.11	28	28	81

□ 공항 소음대책사업 지정대상

- (대상) 소음영향도가 큰(75웨클 이상) 민간 전용공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항*

* 소음대책지역 현황 : 김포·제주·여수·울산·인천·김해 등 6개 공항

- (소음대책 기준)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소음대책사업 및 건축제한 실시

구 역		소음영향도 (WECPNL)	소음대책사업		건축제한
소음 대책 지역	제1종구역	95이상	· 주택방음·냉방시설 · 학교방음·냉방시설 ·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 전기요금(학교, 주민주거) · 주민지원사업 지원	· 손실·토지 매수청구	· 신축 증·개축 금지
	제2종구역	90~95미만			· 신축금지, 방음 조건 증·개축 허가
	제3종구역	75~90미만			· 방음시설 조건 으로 신축 증·개축 허가
인근지역		70~75미만	· 주민지원사업 지원		

*웨클(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가중등가평균감각소음수준) : 항공기 최고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별로 운항회수를 가중하여 주민이 실제 느끼는 소음에 가깝게 산출한 소음단위,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써,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dB)와 차이가 있음

2. 공항소음과 건강피해 관련 연구 현황

□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경기도, 2017)

- (수행기관) 경기연구원
- (연구기간) 2017.2.13.~2017.5.31
- (주요내용) 김포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부천, 김포, 광명시 일부)과 인근지역 주민(1,011명)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설문조사 결과,
 - 최근 5년 이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겪은 가장 심각한 피해는 ‘일상생활 피해(43.6%)’, ‘정신적 피해(18.9%)’, ‘재산권 피해(8.3%)’, ‘신체적 피해(8.3%)’ 등의 순으로 확인

□ 서남권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주민건강영향 조사(서울시, 2014)

- (수행기관) 한림대 의대(주영수 교수)
- (연구기간) 2014.1.~2014.12.
- (주요내용)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등)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2곳) 및 대조지역(1곳) 성인 3,531명, 초등학생 1,1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청력, 심혈관계 질환 검사와 초등학생 정신건강 및 학습장애 검사 결과,
 - 소음피해지역의 초등학생의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증상 비율이 대조지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피해지역 초등학생		대조지역 초등학생
	제3종 나지구 ¹⁾	제3종 다지구 ²⁾	
총 학생수	235명	782명	134명
우울증 증상	6.00 %	4.98 %	1.47 %
ADHD	2.40 %	-	1.47 %

* ¹⁾소음영향도 80-85 미만, ²⁾소음영향도 75-80